

환경교육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8년 4월 28일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대방동) 2층
- 주최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KEEN), 국제환경교육연구소
- 주관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KEEN)
- 후원 : 환경부

차 례

○ 행사안내 / 1

- 진행 일정

- 토론 프로그램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및 양성기관운영 / 4

 -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개요 / 51

○ 부 록 / 67

- 환경교육진흥법 전문

행사 안내

□ 추진배경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시행을 위함.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부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등,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직무분석에 대한 논의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경위

-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경재의원, '07.3.26)
-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제종길의원, '07.6.12)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의결('07.11.20)
 - 공청회(10.1)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의결('08.2.12)
-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08.2.19)
-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08.3.10)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위한 워크숍 필요성 제기
- 국무회의 심의('08.3.11)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 워크숍개최 (신구대학식물원) ('08.3.23)

□ 기획 취지

- 이번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마련 필요성.
- 환경교육진흥법에대한 일반인의 인식 저변확대.
- 환경교육진흥법내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대한 전문가의 의견외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의 장 마련

□ 개요

- 일시 : 2008년 4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 여성플라자 (대방동) 2층 회의실
- 주최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KEEN), 국제환경교육연구소
- 주관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KEEN)
- 후원 : 환경부

□ 진행 계획

시간	행사내용	진행	비고
13:30 ~ 13:45 (15분)	기념식	사회: 정병준 사무처장	
	인사말	KEEN 공동대표 환경부 환경협력과장	
13:45 ~ 16:00 (135분)	환경교육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토론프로그램 - 환경교육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1. 주제발표 (13:45 ~ 14:45)

13:45 ~ 14:45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제종길 (국회의원)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및 양성기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호 (신구대학교교수) ·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영(공주대학교교수) · 환경교육진흥법제도와 앞으로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	---

2.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14:45 ~ 16:00)

14:45 ~ 15:25 (각 5 ~ 10분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주원 (환경교육센터소장) - 김혜애 (녹색교육센터소장) - 박완희 (생태연구소 '터' 사무국장) - 최석진 (국제환경교육연구소소장) - 최미영 (국제환경전략연구소 능력개발 및 교육프로젝트 상임연구원 / 팀장)
15:25 ~ 16:00 (3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토론 : 방청객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및 양성기관운영

김인호 (신구대학)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및 양성기관 인증 방안 도입

김 인 호 (신구대학 환경조경과)

1. 환경교육 관련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 최근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해설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대도시, 도시근교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환경단체(사회단체)가 스스로 나서는 곳도 있고, 행정기관¹⁾이 주도하는 곳도 있다. 때로는 지방의제²⁾, 재단법인³⁾, 중앙정부⁴⁾ 등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 이러한 활동들은 ‘생태안내자’, ‘환경지도자’, ‘숲해설가’, ‘환경해설가’, ‘자연안내자’, ‘생태환경안내자’ 등 정말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지역장소별, 단체별로 실시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일련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에 배출된 지도자들이 일반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숲, 하천, 공원, 식물원, 사적지 등지에서 의미있는 환경해설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회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환경해설가(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이며, 인증된 교육과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환경교육(환경해설)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과 환경교육에 대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숲해설가 분야가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환경해설가 양성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관련된 자격제도와

1) 성남시의 경우에는 1999년부터 환경지도자를 격년제로 양성하고 있는데, 수료한 환경지도자들은 성남시 공원의 환경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2) 광역지방의제21, 기초지방의제21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환경해설가 양성과정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기의제21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실천사업으로 안내자 양성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생태안내자 육성사업으로 광명YMCA, 남양주YMCA, 성남환경운동연합,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등 14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9월 23일-25일에는 경기도의 17개 시군 31개 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안내자 공동연수를 진행하였다.

3)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지도자양성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2003년 발족한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도 숲 해설가 양성과정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

4)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환경단체와 학교대상의 체험환경교육 지원사업, 여성부(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성(주부) 대상의 생태안내자 재취업과정 프로그램, 노동부, 보건복지부(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노인대상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숲해설가 양성과정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원레인저(Park Ranger, 자연환경안내원)를 공개 채용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부처에서 환경해설가 양성과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관장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발 및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 사회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해설가 관련 양성과정은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250여개의 양성과정 교육이 실시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해설가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하기 보다는 일련의 교육내용을 담당할 강사중심으로 교육과정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교육내용과 강사진의 중복으로 교육과정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요한 것은 환경해설가 국가공인자격증이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필요하며, 자격부여를 위해서 어떤 절차와 무엇을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격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며, 환경교육의 질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사회적 수요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판단된다.

2. 일본 환경교육 관련 인증제도 사례

- 일본의 자격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 공적자격, 민간자격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검증하는 자격이며 주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적 성격을 갖는 자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공적자격은 민간이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중간 형태의 자격이며, 주로 해당 관청의 고시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민간자격은 민간이 스스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발급하는 자격이다(송영은, 2004).
- 환경관련 국가자격은 공해방지, 위생관리, 독극물 취급, 정확조, 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각 자격마다 다른 수여기관에서 자격 수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련 공적자격은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자 한 종목으로서 일본 환경위생센터 동서일본지부에서 자격을 수여하며, 후생대신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관련 민간자격은 바이오톱 관리사, 환경관리사, 삼림 인스트럭터,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 심사원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환경교육 관련 자격은 아직 없으며, 민간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 양성 강좌가 중심이 되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송영은, 2004).
- 일본 숲교육 지도자 양성과정과 자격증 사례를 살펴보면, 숲교육 지도자와 관련하여 수목환경네트워크협회(纂)가 주관하는 Green Saver, 전국삼림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

관하는 산림인스트럭트(안내자) 등의 2개 민간자격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 CONE(Council for Outdoor and Nature Experience,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⁵⁾이 주관하는 자연체험지도자 등록제도와 (사)일본야조회가 주관하여 인증하는 레인저(Ranger, 환경해설가), RAC(River Activities Council)⁶⁾가 인증하는 지도자인증제도, 공동보험제도 등 민간환경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등의 환경해설가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가. 산림인스트럭터 자격제도(공적자격, 민간자격)

- 산림인스트럭터 자격제도는 도시주민 등의 일반 산림이용자에게 산림과 임업 지식을 전달하고, 산림 안내와 산림 안에서의 야외활동을 지도하는 산림인스트럭터를 육성하여 산림의 총합적 이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촌과 임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에 발족하였다. 산림인스트럭터는 산림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산림과 임업 지식을 전하고 산림 안내와 산림 안에서의 야외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 최초의 산림인스트럭터 시험은 1991년 11월에 실시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48명의 산림인스트럭터가 탄생했다. 그 뒤 회를 거듭하여 2003년에는 제 13회째 시험을 실시했고 바로 어제 239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13년간 합격자 총수는 1, 894명이고 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총 11, 206명이다.

표 4 산림인스트럭터 자격시험 개요

구 분	과 목	내 용
1차 시험 (시험은 연 1회, 회장은 전국 5개소)	산림	- 산림의 구조, - 식생의 천이, - 수목과 산림의 동식물 - 산림의 지질, 토양과 수분, - 그 외 지역 산림에 관한 것
	임업	- 산촌과 농림업, - 산림의 효용, - 산림 업무 - 목재와 특용임산물(버섯 포함) 이용 - 그 외 임업에 관한 것
	산림내의 야외활동	- 산림레크리에이션, - 캠핑, - 자연물공작 - 그 외 산림내의 야외활동에 관한 것
	안전과 교육	- 안전 지식(기상포함), - 구급처치법 - 환경교육, 자연보호, - 지도기술, 기획방법 - 그 외 다른 안전과 교육에 관한 것
2차 시험	실기, 면접	-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와 면접을 실시 - 또 시험에 앞서 '산림인스트럭터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강습을 실시

-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며, 시험에 앞서 '산림인스트럭터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며, 시험의 엄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해 산림인스트럭터 심사위원회를 두고 합격자를 판정한다.

5) <http://www.cone.ne.jp>

6) <http://www.rac.gr.jp/index.html>

나. 그린세이버 자격제도(공적자격, 민간자격)

- 1995년에 설립된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SHU)가 1990년부터 시작하여 주관하는 민간자격제도인 Green-Saver 자격 제도로 식물이나 자연환경·생태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펼치기 위하여 Green-Saver 검정의 실시하고 있는데, 자격증제도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루어지는 1단계(베이직), 2단계(어드벤스)단계와 논술식으로 치루어지는 3단계(마스터즈)가 개설되어 있다.
- 1998년도 처음 시행할 시에는 500명이 응시하였으나 다른 단체에서 자격증제도가 많아지면서 2002년도에는 300명 정도 응시하고 자격취득 후에는 각자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베이직), 2단계(어드벤스)는1300명 통과 마스터스(3단계)는 12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시험장소는 사무실이 소재한 동경, 오사카 두 곳에서 1년에 한번 시행한다. SHU는 그린세이버 검정 제도를 주관하는 단체이다.

표 5 그린세이버 자격 구분 교과목

구분	자격 특성	교과목
Basic	식물과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일본문화와 식물과 접하는 방법 등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1 식물의 기초지식 2 생태계와 자연보호 3 식물의 재배와 관리 4 식물의 문화 · 혜택
Advance	생물의 다양성의 관점에서부터 자연환경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하고 인위적인 것에 의한 자연으로의 damage (귀화종/절멸/범률 등)를 중심으로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1 식물의 자연사 2 식물과 문화 · 습관 3 식물 보호와 기술 4 생태계와 자연보호
Master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배운다	1 자연을 받아들이는 방법 2 자연과의 공생 3 자연을 배우는 방법 4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 베이직과 어드벤스는 동시수험이 가능하지만, 마스터수험자격은 어드벤스합격자만 해당된다.



그림 4 3단계(마스터즈 로고)



그림 5 3단계(마스터즈 배지)



그림 6 베이직(초록색),어드벤스(밤색)



그림 7 그린세이버 자격증

다.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CONE)

- 2000년에 일본의 다양한 환경해설관련 개인 자격과 단체를 횡으로 엮어 더욱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협력하여 만든 것이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통칭 CONE이다.
- 처음에는 80개 단체로 시작했는데 2008년 4월 현재 340여개 단체가 가입하였고 125단체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으로 수준별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2000년 5월에 다양한 자연체험활동의 보급에 공헌할 수 있기 위해서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CONE, Council for Outdoor and Nature Experience)”를 설립하였는데, 2002년 3월부터는 자연체험활동추진협회를 법인으로登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있다.
-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는 “자연체험활동현장의 정신”에 근거하면서, 자연을 대상으로 한 모든 자연체험활동의 촉진에 기여해 나가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자연체험활동의 조사 연구나 보급·계발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연체험활동의 추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민간 기관, 단체와 기업 및 정부·지방공공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02년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연체험활동 지도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도자의 명칭과 종별을 정하고 있는데, 자연체험활동 리더, 자연체험활동 주니어 리더, 자연체험활동 인스트럭터, 자연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자연체험활동 트레이너 1종, 자연체험활동 트레이너 2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또 수준별 공통교육과정과 경험 및 연수회에 지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앞으로 등록자 수 10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등록자의 이름, 특기분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현재, 자연체험활동 리더는 11,195명, 자연체험활동 인스트럭터는 1,792명, 자연체험활동 코디네이터는 1,001명으로 자연체험활동 트레이너는 257 명으로 2003년 12월 현재 전체 자연체험활동등록자의 총수는 13,988명이다.
- CONE의 지도자 제도는 각 단체의 지도자제도는 독립적이며, 각각의 지도자제도에 호환성을 가지는 것을 큰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지도자의 레벨을 어느 정도 통일시켜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야조회는 버드워칭 지도자를 양성하고 보이스카웃은 캠프기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각각 연수 내용은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다. 그 비슷한 부분을 큰 틀로 하여 공통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각 단체의 지도자양성교육과정을 조금씩 개량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일정 레벨을 유지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각 단체는 각각 독자적인 지도자제도를 그대로 남겨놓고 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CONE에 등록을 한다. 그 시점에서 공통지도자가 된다. CONE에 등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을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공통의 자격으로서 통용된다. 각 단체의 지도자자격을 취득할 것과 CONE으로의 등록이라는 두 단계의 공통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등록된 지도자는 CONE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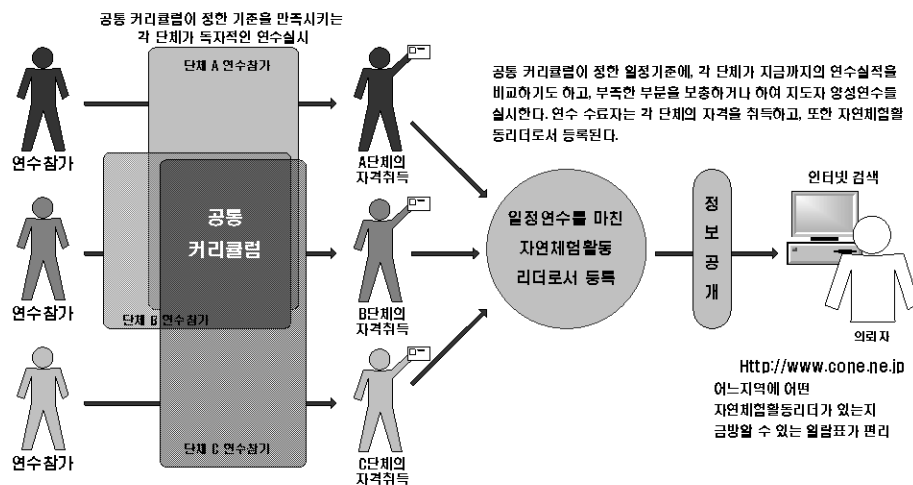


그림 8 일본 CONE 등록 및 인증체계

표 6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유형과 자격요건

구 분	연령구분	자격요건	갱신
자연체험활동 리더	만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활동 리더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등의 연수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당일로 10명 정도로 적은 인원을 주변자연으로 안내할 수 있다 - 공통교육과정 21시간 - 단체를 통해 「자연체험활동리더」로 등록 - 2년간에 걸쳐 30일 이상 경험을 쌓는다 - 참가자로서 지도적인 입장으로서의 함께 일수 - 지도적 입장이라는 것은 어시스턴트이상의 관계로 모임, 답사, 반성회 등 활동포함 - 활동실적의 기록을 제출 - 그 외 실시하고 있는 구급법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년 이내
자연체험활동 주니어 리더	16세이상~18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활동 리더의 조건을 채우는 사람 	
자연체험활동 인스트럭터	자연체험활동 리더로 만2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활동 인스트럭터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등의 연수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변자연으로 소수의 사람을 안내하는 자연체험활동 지도 가능 - 공통교육과정 23시간, - 페이퍼테스트실시 - 단체를 통해 「자연체험활동 인스트럭터」로 등록 - 3년간에 걸쳐 45일 이상 경험을 쌓는다 - 자연체험활동의 준비, 기획운영 실제 체험으로서의 관계를 경험으로 간주 - 3년간 레포트 제출 	3년 이내
자연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자연체험활동 인스트럭터로 만23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활동 코디네이터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고,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변자연을 필드로 한 자연체험활동의 기획과 운영 가능 - 리더와 인스트럭터의 활약하는 장을 만들 수 있다 - 공통교육과정 19시간 - 페이퍼테스트실시 - 단체를 통해 「자연체험활동코디네이터」로 등록 - 소속단체에서 지도자양성에 관계된 실적이 30일 이상 있다 - 소속단체가 본인의 활약 실적을 증명 - 소속단체가 본인을 추천 - 코디네이터등록 후 2년간 활동실적 	3년 이내
자연체험활동 트레이너 1종	자연체험활동 코디네이터로 만2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활동 트레이너 양성사업을 수료하였고, 인정제도위원회 답신에 의해 이사회가 승인한 사람으로 리더양성강좌 기획과 코디네이터, 운영, 진행, 강사(일부)가 될 수 있는 사람 - CONE주최의 트레이너1종 양성강좌 10시간, - 시험실시 - 이사회가 인정하여 개인을 자연체험활동트레이너1종로 등록 - 리더양성강좌를 3회 실시 - 인스트럭터, 코디네이터양성강좌실시의 어시스턴트를 경험 - 트레이너2종, 2명의 추천 	1년 이내
자연체험활동 트레이너 2종	자연체험활동 트레이너1종 지도자로 만2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활동 트레이너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고, 인정 제도 위원회의 답신에 의해 이사회가 승인한 사람으로 인스트럭터 또는 코디네이터양성강좌 기획과 코디네이터, 운영, 진행, 강사(일부)가 될 수 있는 사람 - CONE주최의 트레이너2종 양성강좌 10시간 - OJT에 의한 평가 - 이사회가 인정하여 개인을 자연체험활동트레이너2종로 등록 	1년 이내

3. 미국 사례

가. 미국 국가해설가협회와 자격증 제도(The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NAI)

- 미국 국가해설협회는 해설(공원, 동물원, 자연학습원, 역사유적, 박물관, 수족관 등의 현장체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협회는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30개국에서 4,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에 의해 선정된 이사회에 의해 지배되며 협회 회원의 약 30%는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으며, 25%는 주정부, 또 다른 25%는 지방정부 그리고 나머지는 사설 영리, 비영리 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 협회는 1988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2개의 조직(자연해설가협회, the Association of Interpretive Naturalists (AIN)와 서부해설가협회, the Western Interpreters' Association (WIA))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형성되었다. 자연해설가협회는 1954년에 설립되었고, 서부해설가협회는 1965년에 설립되었다. 1954년부터 1988년까지 두 개의 협회는 따로 활동을 해 오다가 1988년에 국가해설가협회로 통합되었다. 그와 동시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학생들이 인턴 등을 활동하였다.
-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는데, 전통문화 해설가(Certified Heritage Interpreter), 해설안내자(Certified Interpretive Guide), 해설 관리자(Certified Interpretive Manager), 해설계획가(Certified Interpretive Planner), 해설양성가(Certified Interpretive Trainer), 그리고 해설지원자(Certified Interpretive Host)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 자격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격증의 세분화

- 미국에서는 환경해설가 자격증을 역할에 따라 보다 세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해설가 자격증 제도의 도입 단계에 있으므로 당분간 세분화된 자격증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해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국립공원과 같이 규모가 큰 지역에서 전개되는 환경해설의 경우 역할의 세분화가 필요해지면 이러한 자격증의 세분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성과정의 통합 및 표준화

- 미국은 환경해설가 자격증 제도나 양성과정을 별도로 추진하던 2개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질적, 양적으로 틀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숲이나 갯벌 등과 관련하여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양성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앞으로 공통의 양성과정 표준안을 개발하면서 가능하다면 통합의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대학과의 연계

- 미국의 해설가협회는 콜로라도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학생의 인턴제나 사전 학습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해설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해설가 과정을 대학과 연계하여 혹은 대학의 평생교육원 과정 등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자격증 양성 과정의 구체화

- 미국의 자격증 제도는 참가자격, 이수해야 할 과정, 참가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과정을 정교하게 작성해 놓고 있다. 특히 시험의 유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해설과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참고의 대상이 될 것이다.

표 7 미국해설가협회에서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하시연, 2006 내용 일부수정, 자료: <http://www.interpnet.com>)

구분	대상	자격조건, 평가방법	시간	인원
해설계획가 (Certified Interpretive Plan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계획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전시기획 수행가능자) • 해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전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는 교육이나 경험 등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오픈 북 단답형 주관식, • 논술 시험 • 포트폴리오등의 수행경험과 수행평가 성취증명 • 워크샵에 꼭 참가할 필요는 없으나,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워크샵은 제공됨 	40시간 (5일)	9~15
해설관리자 (Certified Interpretive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형의 해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의 관리자나 감독자를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는 교육이나 경험 등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오픈 북 단답형 주관식 및 선다형 시험 • 논술 시험 • 포트폴리오등의 수행경험과 수행평가 성취 증명 • 워크샵에 꼭 참가할 필요는 없으나,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워크샵은 제공됨 	40시간 (5일)	12~24
해설안내자 (Certified Interpretive Gu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임시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지만 이전에 해설 연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 이상 • 반드시 32시간 워크샵에 참가해야 함 •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 • 10분 프로그램 • 오픈 북 시험 	32시간 (4일)	8~15
해설양성가 (Certified Interpretive Trai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 영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대학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는 교육이나 경험 등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오픈 북 단답형 주관식, • 논술 시험 • 포트폴리오등의 수행경험과 수행평가 성취증명 • 워크샵에 참가할 필요는 없으나,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워크샵은 제공됨 	40시간 (5일)	12~24
전통문화 해설가 (Certified Heritage Interpre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historical) 프로그램과 비역사적 매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해설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는 교육이나 경험 등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오픈 북 시험 / 논술 시험 • 포트폴리오 등의 수행 경험과 수행평가 성취 증명 • 워크샵에 참가할 필요는 없으나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워크샵은 제공된다. 	40시간 (5일)	12~24
해설지원자 (Certified Interpretive H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해설을 하지는 않지만 방문객을 만날 기회가 많은 사람들(신입/임시고용자, 자원봉사자, 노무직, 안내소직원, 경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 이상 • 반드시 16시간 워크샵에 참가해야 함. • 오픈 북 시험 • 비디오 시험 	16시간 (2일)	8~15

나. 북미환경교육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환경교육 자격 프로그램⁷⁾

- 미국 내에서 환경교육 자격사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관심을 불러 일으켜온 주제이다. 북미환경교육협회(North America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 NAAEE)의 환경교육가 준비지침(Guidelines for the Initial Preparation Environmental Educators : GIPEE)을 도입해서 몇몇의 주에서는 이 지침을 자격 프로그램의 기본틀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 속에는 이미 환경교육 자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미주리주는 제외되어 있다.
- 환경교육가들과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전문성 개발을 평가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회의에서 환경교육 자격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었을 때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환경교육가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가 ?
 - 환경교육 실천을 어떤 방법으로 정의하고 평가하고 검증할 것인가 ?
 - 교육 개혁에서 책임과 관련해서 환경교육가들이 가지는 책임은 무엇인가 ?
 -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만한 전문성 개발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하고자 북미환경교육협회와 환경교육과 연수 협력 기구(EETAP)는 국가 환경교육이 자격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및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주된 기관은 노던 일리노이 대학, 오하이오 주립 대학 및 조지아 대학이 있다.
- 이러한 노력은 환경교육의 안팎에서 환경교육 자격 프로그램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및 신생 전문성 신장 및 개발 모델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역량 발달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 이 모델들은 조직적인 인프라, 역량 및 지속적인 교육 권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각 모델의 관련 전략들이 지정된 역량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구, 기관 및 조직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구하는 첫 단계로서 2002년 봄에 텍사스의 갈베스톤 회의에서 환경교육 자격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 14개 주에서 참석한 시험 모임에서는 환경교육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필요사항, 문제점들 및 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대화 과정을 시작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했다.
- 국가단위 작업과 주 단위 작업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명확히 할 것, 행정을 위한 모델을 제공할 것, 자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각각의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 성취 목표를 명확하게 마련할 것, 여러 주간의 협동 전략을 모색할 것 등이다. 현재, 조지아, 켄터키, 텍사스, 유타 주에서는 EETAP이 후원하는 프로젝트

7) Richard E. Osorio(2002), Establishing a National EE Certification Program, NAAEE

의 일환으로서 환경교육 자격 시도를 하고 있다.

표 8 미국의 환경교육관련 자격제도 비교(송영은, 2004; 최석진외, 2003)

구 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주리	유타	알래스카
자격 주관기관	노스캐롤라이나 주 환경 및 자연자원 부(DENR)	환경교육의 수월성 을 위한 조지아 프 로젝트(GPEEE)	미주리환경교육연 합(MEEA)	USEE Program Advisory Council	Anchorage Committee for Resource Education (ACRE)
검정 방법	규정된 교육과정을 4년 이내에 이수하 여 인증 받는 방식	규정된 교육과정을 3년 이내에 이수하 여 인증 받는 방식	규정된 교육과정을 4년 이내에 이수하 여 인증 받는 방식	유타 주 환경교육 자격 능력 루브 릭, 멘토의 추천, 전문가 보증인	규정된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 인증 받는 방식
이수 영역 및 시간	환경교육 관련 위 크숍 (70시간 야외에서의 환경교 육 경험 (50시간 이상) 환경교육 자원 및 환경교육 시설에 대한 지식 (30시간 이상) 교수 (30시간 이 상) 활동 파트너십 (20 시간 이상)	환경소양 교육(20 시간) 환경교육의 기초 (20시간) 환경교육자로서 전 문가적인 책임의식 (20시간) 환경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20시 간 이상) 학습 촉진(20시간) 측정 및 평가(20시 간) 최종 프로젝트(40 시간)	환경교육 관련 위 크숍 (70시간 이 상) 야외에서의 환경교 육 경험 (30시간) 환경교육 자원 및 환경교육 시설에 대한 지식 (30시 간) 교수 (30시간) 활동 파트너십 (30 시간)	-	오리엔테이션 위 크숍 교육 관련 지식과 교수법 과학적 지식 야외 교육 기법과 실제 경험 교수 경험 의무 프로젝트 수 행 지역의 자연 자원 과 시설
프로그램 주관기관	지정된 여러단체	지정된 여러 단체	지정된 여러 단체	-	지정된 여러 단체
평가 방법	포트폴리오 제출	부여되는 과제물 제출	교육 이수를 증명 하는 서류 제출	능력을 증명하는 추천서와 서류 제 출	교육 이수를 증명 하는 서류 제출
평가자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자격 심사 위원회	-
재교육	-	매 5년 단위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함	매 4년 단위로 5 가지 영역의 워크 숍을 각 10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함	매 5년 단위로 자 격 신청절차와 같 은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갱신함	-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숲해설 인증제도

- 2004년 9월에 산림청에서 산림법분법과정을 통해 “산림휴양·문화에관한법률”에 숲해설가 양성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고, 2005년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는 선발·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대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에서 중요한 관건은 인증기준의 적합성, 타당성, 인증절차의 합리성, 인증기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사후관리의 공개성, 투명성 등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것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반을 갖는 숲해설가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만들고, 민간에서 관련 단체들의 합의를 통해 운영 관리하는 민간주도형 운영방식의 채택이 사회환경교육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 숲해설관련 인증제도의 법적인 도입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숲해설 분야의 자율적 발전시스템⁸⁾을 국가가 개입하여 오히려 저해시키는 양상(현재 예상되는 문제⁹⁾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환경교육 진영에서 제기¹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숲해설가 운영기관의 확대, 인증받은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 고용하고, 인증제도 시행이전 숲해설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나 기존 숲해설가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율은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2010년까지 전체 수요인원의 100%를 인증받은 교육과정 이수자로 활용할 계획)
- 2008년 4월 현재 숲해설가 양성과정 초급교육과정으로 숲연구소, 상지대학교 산림학과, 충북숲해설가협회, 숲해설가협회,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북숲환경교육센터

8) 기존의 숲해설 관련 분야는 취미적 참여, 세미직업적 참여, 자아실현적 참여, 모성애적 참여라는 여러 유형의 동기를 갖고 있는 숲해설가들이 공공성의 논리와 상업성의 논리의 갈등구조가 상존하는 숲해설시장체계 안에서 스스로 자정하고 상호 발전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다.

9) 우선, 숲해설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도입은 숲해설 관련 사회단체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가 기대하고 있는 질높은 숲해설가 양성과 프로그램의 제공은 초기 단계에 상업적인 논리에 밀려 지역간 양성과정의 수요가 몇 단체의 집중될 것이며, 이것은 기존에 공익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던 숲해설가 수요공급시스템이 일시에 상업성과 경쟁이라는 경영논리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그동안 지역중심의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의 통합적 발전모델은 쉽게 근간이 흔들릴 것이 예상된다. 기존에 숲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운영하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형, 상업형 기관과 단체가 숲해설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기관의 다양화와 다극화는 숲해설가의 수요와 공급체계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증을 통해 무리하게 숲해설가를 대거 양성하여 수요없는 파잉공급으로 숲해설가 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예견된다. 과연 기존의 열악한 기반에 기초한 숲해설 관련 양성단체가 상업형 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등 6곳이 선정된 상황이다. 프로그램 인증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 중심으로 개발된 숲해설 프로그램을 인증하였으며, 2010년까지 매년 2~3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산림청에서는 2007년 2월에 전문가와 숲해설가 관련 사회단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숲해설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숲해설 인증제도 분야와 숲해설가 양성·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 숲해설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에 대한 사항
 2.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평가
 3. 인증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의 효율적 방안
 4. 인증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개선 사항
 5. 교육과정 교과목의 세부 교육내용 구성 사항
 6. 숲해설 운영제도 개선 사항
 7. 숲해설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8. 숲해설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9. 인증 받은 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발
 10. 그 밖에 숲해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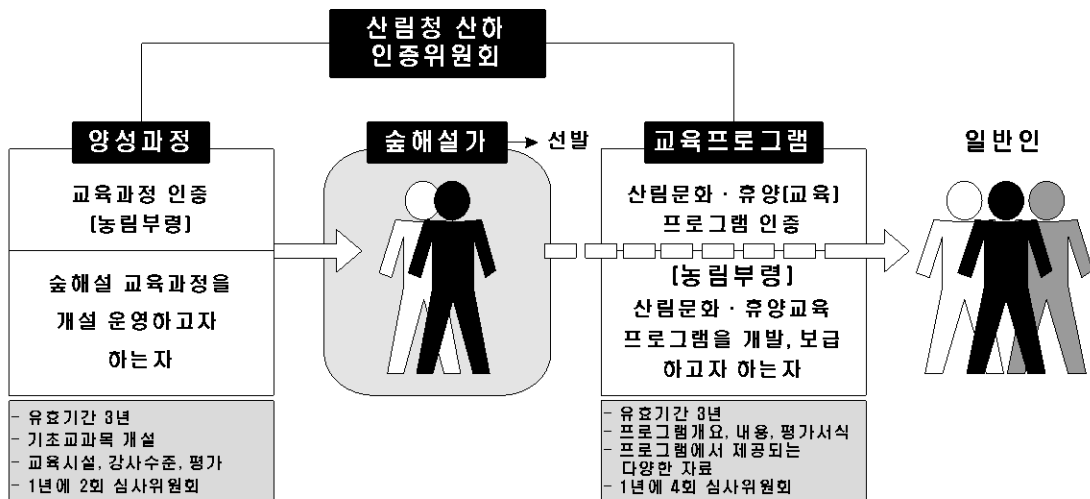


그림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체계도

5.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안)

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DACUM 직무분석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DACUM직무분석은 2008년 3월 23일(일), 신구대학식물원에서 환경교육 연구가(전문가), 관리운영자, 현장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총 19명의 패널(토론참가자)과 함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DACUM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1)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DACUM 직무분석 세부절차

(1) 워크숍 준비과정

- 워크숍 세부 실시계획 수립
- 각 패널리스트에게 워크숍 실시에 대한 통보
- 워크숍 장소 마련 및 준비물 준비

(2) 워크숍 진행

- 워크숍에 대한 orientation 실시
- 직무분석 Process 설명(DACUM의 개념, 주요 용어 설명, 각 역할별 임무 등)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의 정의
- 해당직무의 인력 분류
- 해당직무의 Duty 분류
- 각 Duty를 수행하기 위한 Task 도출
- 직무별 작업중요도, 교육필요도 분류
- 결과정리 및 검증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태도 서술

(3) 검토 수정작업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DACUM 직무분석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정의, Duty, Task,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위한 태도 등을 워크숍 참여진들에게 재검토를 의뢰하여 수정하였다.
- DACUM 직무분석 워크숍을 통해 수립된 직무분석표를 실제 직무수행과 동일한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을 위해 중요한 Task의 누락여부와 각 Task의 작업중요도, 교육필요도 등에 대한 검증(Verification)과정을 진행하였다.

2) 2)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 워크숍 참석대상자

- DACUM 직무분석 운영 구성원
 - Facilitator(진행자) : 김 인 호(신구대학)
 - Recorder 및 Staff : 광임정남, 조경준(환경교육연구소), 이지현(KEEN)
 - 참관인 : 환경부 환경협력과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 참석 패널 명단

이름	소속	직책
이재영	공주대학교환경교육과	교수
하시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최석진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정병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
박영준	국립공원관리공단	팀장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박완희	청주터	사무국장
김혜애	녹색연합녹색교육센터	소장
서승만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사무국장
이미애	여성환경연대	생태교육팀장
서주원	KFEM 환경교육센터	소장
양경모	에코샵 흠씨	대표
이인세	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국장
오바오로	환경보전협회	과장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박종철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연수부장
제상훈	경북자연환경연수원	연수부장
이동엽	경북대	연구원
정수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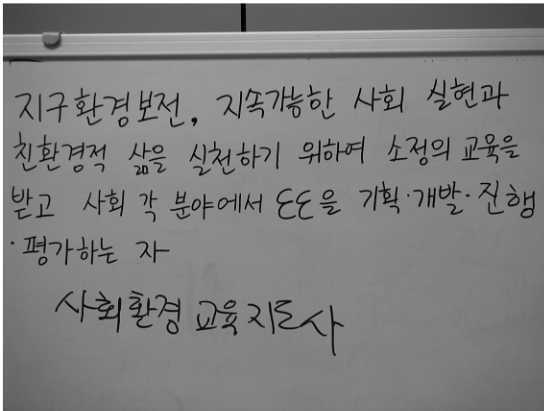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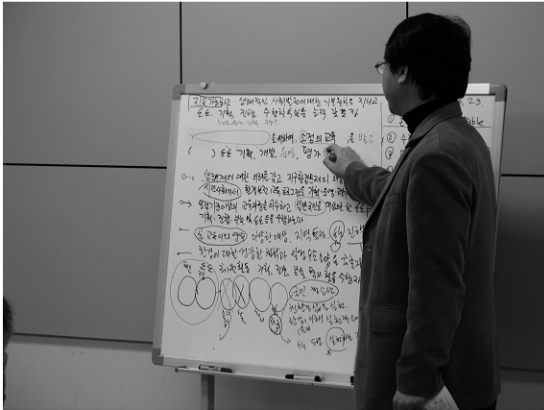


표 10.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DACUM) 차트 (수정전)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정의	지구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진행·평가하는 자											
직무영역 (Duties)	← 수 행 작 업(TASKS) →											
A 환경교육 기획운영	A-1 현황 파악하기 BB	A-2 문제 도출하기 CB	A-3 과제 발굴하기(issue) AA	A-4 제정 계획 수립하기 BB	A-5 사업 타당성 검토하기 AA	A-6 운영 목표 수립하기 AC	A-7 운영 평가하기 BC	A-8 홍보·마케팅 전략 만들기 AA				
B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B-1 프로그램 목표 수립하기 AB	B-2 수요 조사하기 AA	B-3 대상자 결정하기 BB	B-4 주제 정하기(방향설정하기) AB	B-5 교육자 확보하기 BC	B-6 관련 자료 조사하기 CB	B-7 예산 계획 수립하기 AB	B-8 홍보 계획 수립하기 CA	B-9 기획안 만들기 A			
C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C-1 내용 정하기 AB	C-2 안전 계획 수립하기 AA	C-3 세부 정하기 AA	C-4 교수학습 방법 정하기 AA	C-5 교육자 선정하기 BC	C-6 평가 계획 수립하기 BA	C-7 시연·수정하기 AC	C-8 세부 실행 계획안 작성하기 CB	C-9 교구·교재 개발하기 AA			
D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D-1 참가자 모집·홍보하기 AB	D-2 사전 답사하기 AB	D-3 장소 준비하기 AC	D-4 오리엔테이션하기 AA	D-5 도입 활동하기 AA	D-6 본 활동하기 AA	D-7 마무리 활동하기 AA	D-8 사후 정리하기 BC	D-9 활동 일지 작성하기 BC	D-10 사업 보고서 작성하기 AA		
E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E-1 평가 목표 설정하기 BB	E-2 평가 방법·대상·항목 정하기 AA	E-3 평가 도구 작성하기 BA	E-4 평가 자료 모으기 AC	E-5 평가 실행하기 CC	E-6 평가 결과 분석하기 BA	E-7 평가 결과 반영하기 AB	E-8 평가보고서 작성하기 BB				
F 전문성 개발	F-1 활동 규범 만들기 BB	F-2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 BA	F-3 관련 정책 제도 모니터링하기 CB	F-4 환경 지식 배양하기 BB	F-5 의사소통 능력 배양하기 AA	F-6 프로그램 기획 능력 개 발하기 AA	F-7 응급처치 능력 갖추기 BA	F-8 전문영역 개발하기 AC	F-9 홍보 역량 키우기 BB	F-10 다양한 현장 체험하기 CB	F-11 환경철학·윤리 학습하기 AA	F-12 친환경적 삶 실천하기 BC
G 환경교육 기반 구축	G-1 국제 네트워크 구축 CB	G-2 국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 AB	G-3 환경교육 장소 만들기 AA	G-4 재원 마련하기 AA	G-5 정책 만들기 BA	G-6 인적자원 양 성하기 AA	G-7 정보망 구축하기 BA					

※ 작업(Task)중요도, 교육필요도는 알파벳으로(순서대로) 표기하였음

표 1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DACUM) 차트 (수정후)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정의	지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제반 활동을 기획·개발·진행·평가하는 자											
직무영역 (Duties)	← 수 행 작 업(TASKS) →											
A 환경교육 기획운영	A-1 현황 파악하 기 BB	A-2 문제 도출하 기 CB	A-3 과제 발굴하 기(issue) BB	A-4 제정 계획 수 립하기 CC	A-5 사업 타당성 검토하기 CA	A-6 운영 목표 수립하기 AC	A-7 운영 평가하 기 BC	A-8 홍보·마케팅 전략 만들기 BA				
B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B-1 프로그램 목 표 수립하기 AB	B-2 수요 조사하 기 BB	B-3 대상자 결정 하기 BB	B-4 주제 정하기 (방향설정하기) AB	B-5 교육자 확보 하기 BC	B-6 관련 자료 조사하기 BB	B-7 예산 계획 수립하기 AB	B-8 홍보 계획 수립하기 AA	B-9 기획안 만들 기 AA			
C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C-1 내용 정하기 AB	C-2 안전 계획 수립하기 BA	C-3 세부 정하기 활동 AC	C-4 교수학습 방 법 정하기 AA	C-5 교육자 선정 하기 AB	C-6 평가 계획 수립하기 AA	C-7 시연·수정하 기 BC	C-8 세부 실행 계획안 작성 하기 CB	C-9 교구·교재 개 발하기 AA			
D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D-1 참가자 모집· 홍보하기 AB	D-2 사전 답사하 기 AB	D-3 장소 준비하 기 AC	D-4 오리엔테이션 하기 BB	D-5 도입활동 하 기 AA	D-6 본 활동하기 AA	D-7 마무리 활동 하기 AA	D-8 사후 정리하 기 BC	D-9 활동 일지 작성하기 BC	D-10 사업 보고서 작성하기 AA	D-11 교육교구교재 사전준비 AC	
E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E-1 평가 목표 설정하기 BB	E-2 평가 방법·대 상·항목 정하 기 AA	E-3 평가 도구 작성하기 BA	E-4 평가 자료 수 집하기 AC	E-5 평가 실행하 기 CC	E-6 평가 결과 분석하기 AA	E-7 평가결과 반 영하기 AB	E-8 평가 보고서 작성하기 BB				
F 전문성 개발	F-1 활동 규범 만들기 BC	F-2 생태적 감수 성 키우기 BA	F-3 관련 정책 제도 모니터 링 하기 CB	F-4 환경관련 지 식 배양하기 AA	F-5 의사소통 능 력 배양하기 AA	F-6 프로그램 기 획 능력 개 발하기 AA	F-7 응급처치 능 력 갖추기 AA	F-8 전문영역 개 발하기 AB	F-9 홍보 역량 키우기 BB	F-10 다양한 현장 체험하기 BA	F-11 환경철학·윤 리 학습하기 AA	F-12 친환경적 삶 실천하기 AA
G 환경교육 기반 구축	G-1 국제 네트워크 구축하기 CB	G-2 국내 인적 네트 워크 구축하기 AB	G-3 환경교육 장 소 만들기 AA	G-4 재원 마련하 기 BB	G-5 정책 만들기 BB	G-6 인적자원 양 성하기 AB	G-7 정보망 구축 하기 BC					

※ 작업(Task)중요도, 교육필요도는 알파벳으로(순서대로) 표기하였음

표 12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

구분	태도	제안자	도출과목
환경철학 환경윤리 생태적 감수성	환경적 철학 및 도덕성	오바오로	환경철학 환경윤리 환경심리학
	환경적 감수성	오바오로	
	친환경적 삶에 대한 확립된 가치관	박종철	
	생태적 철학관	서주원	
	환경에 대한 건강한 철학	이인세	
	공정성(중용)	하시연	
	생명존중, 성실성	박완희	
	공동체적 삶에 대한 철학/가치관	이강오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가치관	이강오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이동엽	
	생명존중	정병준	
	환경에 대한 감수성 (생태적 감수성)	하시연	
	생태적 감수성	박완희	
	생태적 감수성	서승만	
	생태적 감수성	이인세	
생명존중	양경모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	정병준		
환경문제 이해(지식) 예:ESD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서주원	환경교육론 생태학 환경학
	환경과 공해에 대한 이해	서주원	
	환경과 공해에 대한 지식	박종철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양경모	
	환경교육, ESD의 기본 내용 이해	최석진	
	사회 교육의 특성 파악	최석진	
	지구와 세상을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다양성, 인권·평화 등)	김혜애	
	자연과 인간에 대한 높은 이해	박종철	
	환경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정수정	
	주요 국내 환경 운동(보전) 사례 학습	양경모	
호기심과 탐구심	차수철		
환경교육 수행능력	활동능력 구비(스킬 : 대상자의 교육, 기자재 활용, 게임 능력 등)	최석진	커뮤니케이션 기법 교수학습 이론/방법론 프로그램개발론 교재개발 프로그램 평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수정	
	커뮤니케이션 능력(구술 능력)	오바오로	
	비판적 사고력	하시연	
	수요자 중심의 친화력	차수철	
	목표수행에 대한 책임감	이동엽	
친환경적 생활실천	실천력 (함양능력)	서주원	생태생활
	인간외식 변화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	이미애	
	봉사정신 (non-profit)	서승만	
	솔선수범하는 태도	최석진	
	친환경적인 삶의 실천	이인세	
	생태적 삶의 실천	김혜애	
	공동체 의식, 사회봉사 정신	박완희	
	친환경적 삶에 대한 의지	정수정	
	친환경적인 생활태도	정병준	
	평소 친환경적 생활습관의 체득	오바오로	
환경에 대한 관심 책임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이미애	
	생활 및 사물에 대한 친근감	이동엽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걱정	이재영	
	사람을 대하는 인간적 신뢰도	오바오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연계성)	차수철	
	외향적인 태도와 일에 대한 책임성	오바오로	
	다른 생명에 대한 애정	이재영	
	다른 사람과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기	이재영	
	사회(변화)에 대한 애정	이강오	
	환경보호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박영준	
	피교육자에 대한 깊은 애정	김혜애	
	지구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환경에 대한 겸허한 자세	이미애	
	인간사랑과 자연사랑 마음	서승만	
	자연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 (태도)	박영준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성실한 태도	박영준		

표 1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 정의(definition) 수정사항

반영사항 직무영역	신 설	수 정	보 완	삭제 및 기타
직무의 정의	<p>기 존 : (직무분석시 정리한 내용) 지구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진행·평가하는 자</p> <p>수 정 : 1. 지구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대중의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돕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진행·평가하는 자 2. 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진행, 평가하는 자 3. 지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친환경적 삶을 실현하기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제반 활동을 기획·개발·진행·평가하는 자</p> <p>최종 정리안 :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제반활동을 기획·개발·진행·평가할 수 있는 자</p>			

표 14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 수정·보완

반영사항 직무영역		신 설	수 정	보 완	삭제 및 기타
A	환경교육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AA→BB • A-4, BB→CC • A-5, AA→CA • A-8, AA→BA 		
B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 AA→BB • B-6, CB→BB/CC • B-8, CA→AA • B-9, AA→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9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 	
C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 AA→BA • C-5, BC→AB • C-6, BA→AA • C-7, AC→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3, AA→AC 	
D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10, 교육교구교재 사전준비 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4, AA→BB 		
E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6, BA→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4 평가자료 모으기→평가자료 수집하기 	
F	전문성 계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1 BB→BC • F-4, BB→AA • F-7 BA→AA • F-8, AC→AB/AA(초급일 경우) • F-10, CB→BA • F-12, BC→AA <p>(초급과정에서는 교육중요도가 A, 이후에는 실천하는 지도자여야 교육에 힘이 실릴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4 환경관련 지식 배양하기 BB 	
G	환경교육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4, AA→BB • G-5, BA→BB • G-6, AA→AB/CB • G-7, BA→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 국제네트워크 구축→국제네트워크 구축하기 • G-2 국내인적네트워크 구축→국내인적네트워크 구축하기 (다양한 교육공간 활용에 필요한) AB • G-3 환경교육 장소 만들기→환경교육 현장 만들기 	

표 15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주요 직무(수정전)

작업중요도 : A이상, 교육필요도 : B이하	Key Task
	작업중요도 : A이상, 교육필요도: A이상
A-6 B-1, B-4, B-7 C-1, C-7 D-1, D-2, D-3 E-4, E-7 F-8 G-2 13 Tasks	A-3, A-5, A-8 B-2, B-9 C-2, C-3, C-4, C-9 D-4, D-5, D-6, D-7, D-10 E-2 F-5, F-6, F-11 G-3, G-4, G-6 21 Tasks
작업중요도: B이하 교육필요도: B이하	작업중요도: B이하 교육필요도: A이상
A-1, A-2, A-4, A-7 B-3, B-5, B-6 C-5, C-8 D-8, D-9 E-1, E-5, E-8 F-1, F-3, F-4, F-9, F-10, F-12 G-1 21 Tasks	B-8 C-6 E-3, E-6 F-2, F-7 G-5, G-7 8 Tasks

표 16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주요 직무(수정후)

작업중요도 : A이상, 교육필요도 : B이하	Key Task
	작업중요도 : A이상, 교육필요도: A이상
A-6 B-1, B-4, B-7 C-1, C-3, C-5 D-1, D-2, D-3, D-11 E-4, E-7 F-8 G-2, G-6 16 Tasks	B-8, B-9 C-4, C-6, C-9 D-5, D-6, D-7, D-10 E-2, E-6 F-4, F-5, F-6, F-7, F-11, F-12 G-3 18 Tasks
작업중요도: B이하 교육필요도: B이하	작업중요도: B이하 교육필요도: A이상
A-1, A-2, A-3, A-4, A-7 B-2, B-3, B-5, B-6 C-7, C-8 D-4, D-8, D-9 E-1, E-5, E-8 F-1, F-3, F-9 G-1, G-4, G-5, G-7 24 Tasks	A-5, A-8 C-2 E-3 F-2, F-10 6 Tasks

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근거

3)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 결과 반영

①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 정의에서 제안한 내용에 기초

-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직무 정의 내용 중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제반활동을 기획·개발·진행·평가할 수 있는 자”에서 중요 내용을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였다.

- 지구환경보전, - 지속가능한 사회, - 친환경적 삶의 실천
- 환경교육에 관한 제반활동을 기획·개발·진행·평가

②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Key Task에 기초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18개의 Key Task(B-8, B-9, C-4, C-6, C-9, D-5, D-6, D-7, D-10, E-2, E-6, F-4, F-5, F-6, F-7, F-11, F-12, G-3)를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였다.

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

- 패널들이 제안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는데, 크게 ① 환경철학, 환경윤리, 생태적 감수성 분야, ② 환경문제 이해(지식) 분야, 예:ESD 등, ③ 환경교육 수행능력 분야, ④ 친환경적 생활실천 분야, ⑤ 환경에 대한 관심 책임감 분야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교과목을 도출하였다.

4) 2) 선행연구 내용 검토 반영

- 송영은(2006). 사회환경교육지도자의 자격제도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시한 초·중·고급 교육과정 검토
- 하시연(2006). 숲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시한 초·중·고급 교육과정 검토
- 김인호 외(2003). 환경해설가 양성과정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검토

5) 3) 일본의 환경교육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내용 반영

- 환경교육 지도자에게 특히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누구라도 노력하는 것으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질은 선천적인 것 보다도 후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교육 지도자에게 최저한 요구되는 필요조건을 제시하여 환경교육 지도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면 한다.

(1) 자연보호가(naturalist)로서의 자질

-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연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자연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것 만이라면 곤충을 좋아하는 소년이나 새를 좋아하는 소녀라도 곧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을 좋아하는 감수성의 시기를 거쳐 자연의 구조를 생태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인생태도는 환경윤리라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윤리감을 가지고 실천해가려고 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일 것이다.

(2) 인간을 좋아하고 민주적인 리더일 것

- 지도자는 자신만이 자연을 알고 있어도 안된다. 자연의 매력과 자연이 갖는 풍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역할이므로 인간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된다.
- 또 지도자는 다른 스태프와 많은 자원활동가와 함께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리더로서의 자질이 필요하다.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환경교육을 리드해 가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3) 기술적인 것 측면

- 이상의 기본적인 것 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많다. 그 대부분은 나중에 서술하는 이야기할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지금까지 이같은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또는 각 환경보호단체)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다음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보호에 관한 지식과 그것에 기초한 체계적 사고방식

- 생태학에 기초한 자연보호의 실제 지식과 기술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실행하려고 하는 환경교육이 자연보호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② 판단력과 지도력, 통솔력, 교섭능력

- 지도자로 환경교육 시설을 맡게 될 경우 실제로 다양한 장면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또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원활동가 등의 협력자를 리드해가는 것도 요구된다. 시설의 대표로 다른 곳과 교섭을 하는 경우도 많다.

③ 전달력과 표현력

-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와 문장으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하거나 기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간 차이는 있지만 전달능력은 훈련에 의해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도달 할 수 있다. 또 표현력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면 환경교육에는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④ 사무와 정보처리능력

- 필드워크를 기획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무처리가 요구된다. 또 컴퓨터와 워드들을 사용한 정보처리는 적은 인원으로 행하는 환경교육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면 비로소 광대한 분야의 정보 정리와 보존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컴퓨터 통신에 관한 실용적 지식이 있으면 다른 환경교육시설과의 정보네트워크가 가능하다.

⑤ 창조력과 기획력

-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자연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음악과 회화,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맞춤으로 해서 매우 깊은 내용을 가질 수 있다. 환경교육은 창조적인 일로 항상 새로운 시도 속에서 보다 좋은 교육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자기변혁적인 창조력이 없으면 어느 틈엔가 다른 곳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⑥ 경영감각

- 지금 아직 환경교육의 시설운영만으로 기업으로서 일어서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민영의 환경교육시설이라면 운영을 어떻게 해서든 흑자에 가깝게 하기 위해 최대한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공영의 시설이라 해도 현재의 엄한 행정개혁의 시대에 살아남아 가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과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어떠한 것도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의 효과를 올릴까라는 경영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⑦ 지역의 상황에 관한 지식

- 환경교육은 지역에 밀접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대부분의 경우 환경교육의 일의적인 목적은 그 지역의 자연은 이해하고 지키는 인간을 기르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 있어서 지역을 이해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제 1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의 이해에는 자연환경은 물론 , 역사와 문화, 사회와 경제, 행정, 매스컴, 자연보호상의 문제점과 자연보호운동(단체), 등 다각도에 걸친 지식이 필요하다

⑧ 환경관리기술, 간단한 건설기술

- 필드를 가진 환경교육시설에서는 이 두가지가 꼭 필요하다. 필드는 자연보호의 장인 동시에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장소이다. 이 양방의 기능을 균형있게 지키기 위해서는 필드의 면밀한 조사를 기초로 한 세세한 관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자원 활동 등에 협력을 받아 관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건설작업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와 계획, 설계, 시공지도, 관리라는 일련의 흐름을 생태학적으로 행하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⑨ 안전관리

- 환경교육의 무대는 99%가 야외활동이다. 사람들을 인솔하고 자연해설을 행하는 경우에도, 자원활동가 작업협력을 구할 경우에도 항상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간단한 구급법은 물론 연락통신방법, 위험한 생물 등의 지식, 보험에 대해서 등을 몸에 익혀두어야 한다.

6) 4) 일본 자연환경전문학교의 환경교육과 교육과정 검토

- 환경교육과에서는 자연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연의 혜택, 경이로움, 위대함을 스스로 체험하여 그것들을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달하는 기술을 배운다. 장래의 진로로서 박물관들의 해설원과 레인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보고 알고 즐기고 전달한다

- 환경교육과 교육과정 내용

- 동물생태학실습 : 동물의 분류, 생태에 대해서, 동식물의 표본제작 등에 대해서 배운다
- 식물생태학실습 : 식물의 분류와 식생의 조사방법 등에 대해 배우지만, 환경교육과에서는 식물명의 유래와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배운다.
- 초등환경교육론 : 초등학생 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관찰의 기획과 전달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또 실제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관찰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 DTP : 보급활동에 사용하는 팜플렛과 게시물 등의 출판물을 컴퓨터로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배운다
- 자연환경해설론 : 네이처게임과 프로젝트와일드리는 국내외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해설과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교육소재론 : 도토리 등을 이용한 수공품을 만드는 방법과 목공공작의 기술 등 야외조리와 자연의 혜택을 이용한 창작요리에 대해서도 배운다
- 자연전시론 : 박물관들의 전시물의 전시 방법과 전시물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배운다
- 야외활동실습 : 야외의 위험한 생물과 로프워크, 구멍구급법, 캠프, 키누 등 야외활동의 기본적인 지식을 배운다
- 임해실습(집중강의) : 해변에 사는 생물의 분류생태에 대해서 배운다. 또 해변의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배운다.
- 이외에도 생태학, 컴퓨터실습 등의 강의도 있다.

- 환경교육실지훈련제도 : 본학과에서는 학교내에서의 강의와 실습외에 실제로 초등학생과 가족등을 대상으로 한 관찰회와 수업의 아르바이트 강사로서 파견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경험과 실적을 쌓는 것도 가능하다.

7) 5) 기타 고려사항 검토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에서 제시된 7가지 Duty(① 환경교육 기획운영, ② 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 ③ 개발, ④ 진행, ⑤ 평가, ⑥ 전문성 개발, ⑦ 환경교육 기반구축)을 크게 4가지 직무 영역(① 환경인식, ② 환경지식, ③ 환경교육 수행, ④ 환경교육 기획·관리)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 사범대학 환경교육과의 교육과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시험과목을 참고하였다.
- 국공립 환경관련 기관이나 사회환경교육단체에서 실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시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원칙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질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한국 사회의 건강한 환경인식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어떤 의미로든 현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의 활동과 수준미달의 양성과정 난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8) 1) 대중성과 전문성 확보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의 목적은 사회환경교육의 확대와 함께 활성화, 그리고 사회환경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초급과정은 문턱이 낮게 하고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80% 이수만으로 초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어려운 중급과정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핵심인적자원으로 설정하여 환경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시수와 교육과정 80% 이수후 일정한 시험제도(공통교과를 통과하여야 중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급의 경우에는 필수교과목을 이수후 자신의 지역, 시설(환경교육센터) 대상의 환경교육 진단과 처방에 대한 자신의 개선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향후 비전에 대한 토론 등의 포트폴리오를 워크샵 형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심의 위원회(안)에서 면접을 거쳐야 고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2) 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을 동시에 충족

-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3단계(초급, 중급, 고급)로 위계화하여 각 단계별 담당해야 할 업무의 실수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초급(3급)은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소, 대상, 시기, 주제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을 수행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환경해설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해설가(Interpreter)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중급(2급)은 장소, 대상, 시기, 주제별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며,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조정자(Coordinator)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고급(1급)은 환경교육 관련 제반 활동을 위한 기획 및 조직관리, 그리고, 지역사회환경교육 발전계획수립 등의 종합적 관리능력과 함께 환경교육센터 등의 시설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자(Manager)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각 단계별로 일정 기간의 환경교육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력이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실무수행경험과 능력이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식 수업 도입을 통해 양성 교육과정이 실제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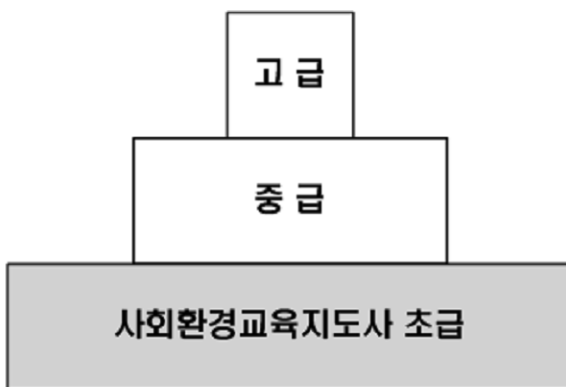


그림 18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적구성



그림 19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과정배분

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과정별 양성교육과정(안)

표 17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과정(안)

구 분	환경인식	환경지식	환경교육수행	기획·관리	비 고
초급(3급) Interpreter	환경철학및윤리 I (4-0-2) 생 태 생 활 I (2-0-1)	환경개론(4-0-2) 환 경 교 육 론 (4-0-2) 환 경 교 육 자 원 (4-8-4)	교수학습방법실습 (4-8-4) 환경교육 ICT I (4-8-4) 안전관리 및 교육 (4-4-3) 체험환경교육실습 (2-12-4)		32-40-26 72시간 공통교과 24시간 선택교과 총96시간 이상
중급(2급) Coordinator	환경철학및윤리 II (4-0-2) 지 속 가 능 사 회 (4-4-3) 생 태 생 활 II (2-8-3)	지 역 환 경 교 육 (4-8-4) 환 경 생 태 학 (4-4-3) 환 경 조 사 방 법 (4-8-4)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4-8-4)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4-4-3) 환경교육교재연구 및개발(4-8-4) 환경교육 ICT II (4-8-4)	환경교육시설계획(4-4-3) 자 원 활 동 관 리 (4-4-3)	46-68-40 114시간 공통교과 30시간 선택교과 총144시간 이상
고급(1급) Manager	환 경 심 리 학 (4-4-3)	환경정책 및 법 규실습(4-4-3) 환경교육네트워크 이해(4-4-3)	수요조사(4-4-3) 환경교육 ICT III (4-8-4) 전시기획(4-4-3) 환경교육기획실습 (4-4-3)	지 역 사 회 환 경 (4-8-4) 프 로 그 램 홍 보 · 마 케 팅 (4-4-3) 조 직 관 리 운 영 (4-4-3) 환 경 교 육 시 설 관 리 운 영 (4-4-3)	44-52-34 96시간 공통교과 6시간 포트폴리오 발표
비 고	20-16-14(36시간)	32-36-25(68시간)	46-80-43(126시간)	24-28-19(52시간)	

※ 표기 방법

○ (이론-실습-학점), ○ 이론 2시간-1학점, 실습 4시간-1학점

※ 자격시험

○ 초급 : 공통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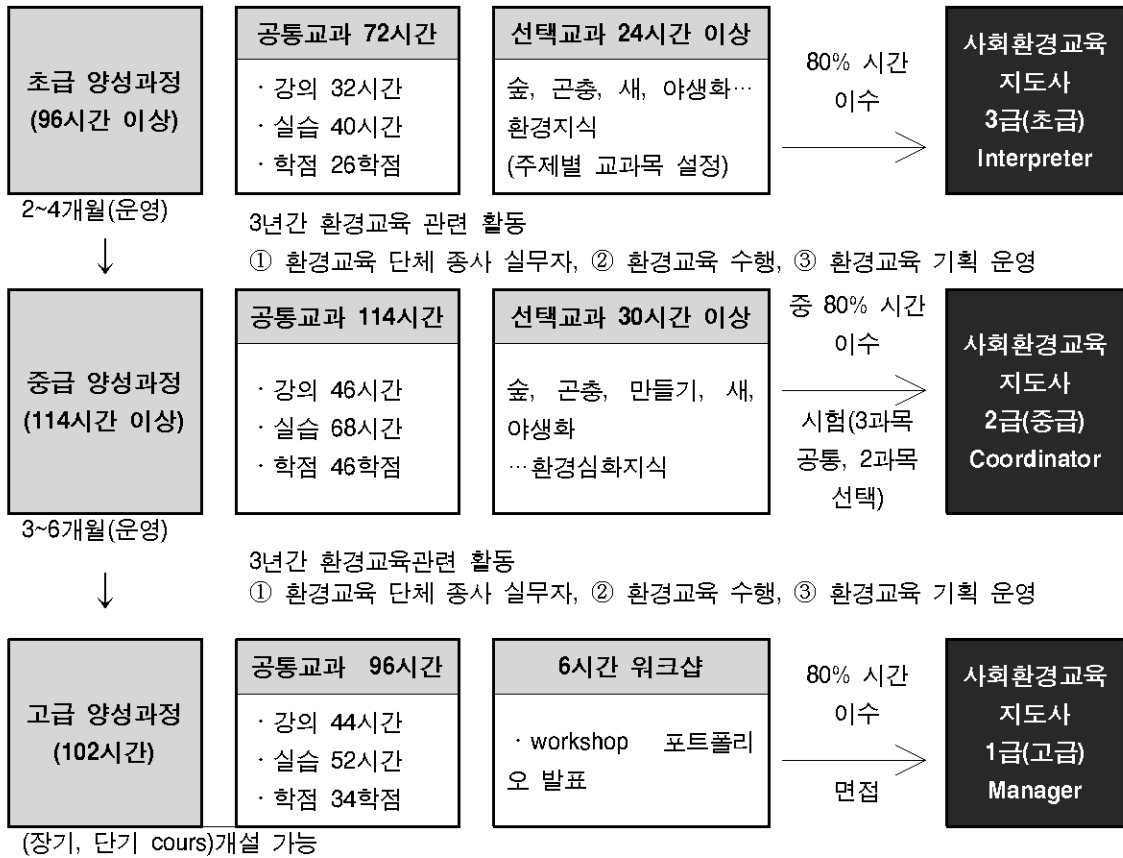
○ 중급 : 공통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

○ 고급 : 포트폴리오, 1일 6시간 포트폴리오 발표 평가 및 면접

표 18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과정별 양성교육과정(안)

과정별	교육 내용		시 간			비고
	구분	교육분야	계	이론	실습	
초 급 (72시간 이상) 선택 24시간이상	계		72	32	40	
	환경 인식	환경철학 및 윤리(Ⅰ)	4	4	-	
		생태철학	2	2	-	
	환경 지식	환경개론	4	4	-	
		환경교육론	4	4	-	
		환경교육자원	12	4	8	
	환경 교육 수행	교수학습방법	12	4	8	
		환경교육ICT(Ⅰ)	12	4	8	
		안전관리 및 교육	8	4	4	
		체험환경교육	14	2	12	
선택과목	생태, 대기, 해양, 숲, 지구환경 등	24	12	12		
중 급 (144시간 이상) 선택 30시간이상	계		144	46	68	
	환경 인식	환경철학 및 윤리(Ⅱ)	4	4	-	
		지속가능사회	8	4	4	
		생태생활	10	2	8	
	환경 지식	지역환경교육	12	4	8	
		환경생태학	8	4	4	
		환경조사방법	12	4	8	
	환경 교육 수행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12	4	8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	8	4	4	
		환경교육교재 연구 및 개발	12	4	8	
		환경교육 ICT(Ⅱ)	12	4	8	
	기획 관리	환경교육시설 계획	8	4	4	
		자원활동관리	8	4	4	
선택과목	생태, 대기, 해양, 숲, 지구환경 등	30	15	15		
고 급 (96시간) 발표 6시간	계		102	44	52	
	환경인식	환경심리학	8	4	4	
	환경지식	환경정책 및 법규	8	4	4	
		환경교육네트워크	8	4	4	
	환경교육 수행	수요조사	8	4	4	
		환경교육ICT(Ⅲ)	12	4	8	
		전시기획	8	4	4	
		환경교육기획	8	4	4	
	기획 관리	지역사회환경	12	4	8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8	4	4	
		조직운영관리	8	4	4	
		환경교육시설 운영관리	8	4	4	
발표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샵)	6	-	6		

표 19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체계(안)



마.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과목 개요(사례)

교수학습방법실습

- 사회환경교육의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고, 환경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수·학습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서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상에 따라 다양하고, 적용가능한 교수·학습법을 습득한다.

환경교육 ICT I, II, III

- ICT 교육은 각 교육내용의 교수-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교과과정에 통합시켜 교육적 매체로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환경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육대상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안전관리 및 교육

- 야외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 활동 등의 진행시 사고 등의 위험요소가 발생하므로 참

가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체험환경교육실습

-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육진행 조건, 교육진행과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직접 체험환경교육에 참여해보고 적용해 보는 실습과정을 통해서 사회환경교육내에서 체험의 요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 비형식적교육인 사회환경교육 영역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절차 등을 학습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해 보는 과목이며,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조사와 적용 및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혹은 지속·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 목표 설정, 방법, 평가도구 개발, 결과 분석 및 활용에 관해 학습하는 것으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통계 및 질적 평가 해석에 대한 방법을 습득한다.

환경교육 교재연구 및 개발

-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의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내용구성과 디자인 등에 대한 이해와 직접 교재를 개발해가는 과정을 배우며, 기존의 교재의 종류와 활용법을 배운다.

수요조사

- 환경교육 기획을 위해서는 각각의 교육대상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각 대상별 환경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전시기획

- 환경교육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데, 그 중 한 가지 주요한 방법으로 전시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하게 되며, 또한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시기획 과정과 방법, 효과에 대해 배운다.

환경교육기획실습

- 기획은 개발, 실행, 평가를 계획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직접적인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 과정 등을 포함한다.

6. 양성기관 인증에 대한 내용(안)

가. 교육시설 요건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강의실, 실습장 등)과 편의시설 등 교육 수행에 적절한 장소여야 한다.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다만,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 (1) 강의실
- (2) 실습장
- (3) 화장실·급수시설
-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5)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상세내역서 및 교보재 보유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 교육과정은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을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수단으로 기본 교육내용별 목표달성도 평가수단(시험지, 실기평가 방안 등), 과 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수단(설문지 등)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 강사진 요건(전문강사 수급)

-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배치해야한다. 각 교육과정은 전문 강사가 이를 교육해야 하며, 전문강사가 환경교육관련 활동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강사 활동에 동의하였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각 교육과정의 전문 강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식(강사 이력서)을 제출하고 강의 동의여부(위촉장, 강의승낙서, 사인·인장 등)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7. 환경교육진흥법 하위법령 작성을 위한 원칙과 쟁점

가. 환경교육진흥법 하위법령 작성을 위한 원칙

① 상호존중과 학습의 원칙

- 각자가 갖고 있는 환경교육의 경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 분야 전체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하위법 작성과정이 상호존중과 이해를 넓히는 학습과정이 되도록 한다.

② 다양성의 원칙

- 각 주체들의 수행해 온 환경교육의 역사와 경험과 성과가 다양하며 그러한 다양성이 환경교육의 자산임을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공통의 비전을 만들고 상호호혜의 과정이 될수 있도록 진행한다.

③ 균형성의 원칙

- 자율성과 공동의 질 관리 사이, 다양성과 가치공유 사이, 공급자와 사용자의 관점 사이,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비전 사이, 큰 단체와 작은 단체, 개인과 단체 사이에서 균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④ 미래지향성의 원칙

-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경력이 쌓이고 전문성이 높아감에 따라 요구될 변화과정을 미리 고려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환경교육지도사의 활동영역을 고민함에 있어 숲해설가 등 기존의 환경교육 활동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지구기후변화 등 변화되는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바람직한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직업과 직무를 개발하고 현실화시키는 관점에서 함께 접근한다. 예, 환경교육코디네이터, 문제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춘 리더 등

⑤ 통합성의 원칙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센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민하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양성과 그 수요처의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 실사구시의 원칙

- 본 법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가 작성하고 실행해야 하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이 보가

내실있고 다양하며 실현가능성을 갖추어 환경교육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성한다. (예, 환경부는 10년 발전계획에서 연간 100억 수준의 기획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각 영역이 어떻게 협조, 분담할 것인가?)

⑦ 포괄성의 원칙

- 모든 제도는 강자에게서는 희망적인 부분이, 약자에게서는 위협이 되는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 약자나 소수가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개안과 주체를 포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몇가지 쟁점

- 이제 시작이고, 해결할 문제가 산재
- 기존 해설가, 환경교육활동가 등의 소급문제, 실무경력 인정 문제
- 사회환경교육지도사들의 양성을 통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문제
- 양성과정 공통교재, 강사진 확보 문제, 공통교재개발, 강사진 연수과정 도입, 워크숍 도입
- 주제별 영역 포함문제는 공통교과와 선택교과 설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숲해설 인증제도와와의 관련성과 해양환경교육분야와의 위계 설정문제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와 저변화를 위해 양성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종합양성기관, 과정별, 전공별 양성기관을 특성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수혜기회의 확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점은행제도와 같은 학점중심의 교육과정 이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준과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음, 교육과정 관리 문제
- 향후 환경교육진흥법이 연착륙을 위해서는 공개된 논의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과정적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록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직무분석 워크숍 회의 내용

1부 오전 session : 환경교육진흥법 관련 논의

* 녹색교육센터 김혜애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의견 반영이 매우 미흡하지 않았나...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환경부와 함께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함께하는 논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심사기준은 누구고, 심사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거대 사회단체의 경우, name 자체가 인증이 될 수 있겠지만, 기타 풀뿌리 단체들은 새로운 미션과 과제를 떠안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환경교육진흥법이 선의의 목적에서 지정이 되었지만,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과정에서 이러한 많은 의견들을 폭넓게 반영하고, 기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11) 이 논의가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차수철

- 환경부에서 얼마나, 어떻게 많은 내용과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염려
-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학교 환경교육은 못 하는 것인가? : 용어의 조정?
- 환경교육 10개년 계획 등에서 수요 창출 뿐 아니라, 환경교육과 관련된 국민적, 기본적 환경 윤리를 활성화하고 높이기 위한 저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표출되어야 하지 않는가... motive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등의 내용이 이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 합의 과정이 필요 :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특화시키는 것인 좋은 것인가. 인센티브를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양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양성되어 있는 것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기본법과 진흥법 : 농업, 숲해설, 해양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임. 환경 파트에서 다룰 수 있다면, 환경 파트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 시민 교육의 진로와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일부분이라도 기본법의 형태로 합의 및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11) ➔ 부분 : Facilitator 정리 부분

➡ 전반적인 환경 윤리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확산과 질적 향상의 문제에 대한 선택 혹은 수렴

* 국립공원관리공단 박영준

- 자연환경해설사 관련 : 수요자가 가장 많은 기관임. 현재 holding상태, 시민단체, 사회환경단체와 함께 갈 수 있는 테두리가 있다면, 함께 가겠다는 기본방향 + 내부적인 개발 및 진행 ➡ 이러한 큰 틀이 움직인다면 함께 가고자 함
- 다양한 방법과 포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임. 환경교육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환경교육네트워크 정병준

- 통제, 관리가 아니라 활성화, 지원이어야 한다. 공익적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인가, 상업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
- 기존 인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 인증이나 방식은 논의가 되겠지만, 인증기관은 학원이 아니다. 이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인증 형태가 되어야 함

* 충남 생명의 숲 이인세

- 지역에서는 새로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형태의 인증기관이 되고 있음. 100시간 정도 교육 과정과 소모임 활동, 어린이들과 프로그램 진행 후 본격적 활동이 되고 있음
- 일자리를 위한 문의 및 참여가 순수하게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이 파괴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수요가 있으며, 필요가 있는 것인가?

➡ 일자리 창출이나, 자원활동의 순수성 및 환경활동, 평생교육이나의 문제

➡ 수요 공급의 문제 + 상업적 측면으로의 변화

➡ 지도사가 양성이 되면, 지도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음. 필요 경비 지원도 가능함

* 환경교육협회 오바로

- 국가가 환경단체, NGO단체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진흥법의 의미가 큰 것이라 보임. 이 법을 통해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질을 높이는 것이며, 교육을 받는 사람도 높은 QUALITY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도사들이 배출되었을 때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양성 후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

➡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알맞게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교육지도사의 수준,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임

➡ 문턱에 대한 합의, 공감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청주 터 박완희

○ 현재 안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음. 혼돈의 상황임.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 생태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생태교육은 없고 양성과정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과정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양성기관으로 인해 풀뿌리 단체의 인력 수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명료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에 남아 자원봉사나 자원활동을 할 사람과 국가나 상급 기관에서 활동할 교육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름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서승만

○ 법을 만들게 된 취지가 환경교육의 확산, 질 향상 등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시행령, 규칙 등에서 취약점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존의 프로그램, 지도사 등에 대한 진단 및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프로그램이 어느 수준이 있는 것인지, 가치에 따라 지역에 따라 평가 자체가 다양해 질 수 있지만, 많은 측면들이 노출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지원하는 입장에서 대응 전략도 있어야 하는 등 많은 고려 사항이 필요한 실정임

* 여성환경연대 이미연

○ 교육시간, 교육시설 등 소규모 NGO 등의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우려점이 있음, 많은 NGO 발생과 더불어 지역에 적합한 지역과 대상에 맞춘 다양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의 틀로 인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 활동 자체가 자발성을 기초로 한 내용을 생산해 오면서 환경교육의 질이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됨.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따라 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수준차, 환경 등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 6개 분야 150여 명의 자원활동가로 움직이고 있음

○ 지향점은 직접 실천을 통한 가꿈

○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고 지향하는 것 보다는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나 진행방향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 우려가 됨

○ 활성화와 현재의 것을 깨지지는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는 점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인가 ➡ 제도적 과제, 정책적 과제, 실천적 과제를 구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 경북자연환경연수원 제상우**

- 경기도, 서울 부분에서는 자연학습, 생태학습에 대한 부분이 없음
- 1년 20,000명 이상이 교육을 함. 교육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북 자연환경 해설가로 인정을 해 줌(최소 1년 과정 무료로 강좌)
- 자연관찰지도자 : 2달 과정. 연수원 학생들에게 교육, 강의
- 제도적 틀 속에서 모아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의 측면을 보호해 줄 측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남자연환경연수원 박종철**

- 사회환경지도사를 연간 몇 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하는지... 청소년지도사의 개념이라면 수요가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환경교육 확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왜 받아야 하며, 어떤 혜택이 있는가...

➡ 수요 공급의 문제

*** 경북대학교 이동엽**

-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쪽에서는 선택의 기준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

*** 최석진 : 관련 5건의 연구**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역할 : 자료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 초급, 고급 정도의 2등급 정도 → 3단계 정도?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수 : 앞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할 문제. 시행령에 들어가야 하는가?
- 인센티브 문제 : 우선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양성기관의 문제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 + 환경보전협회 + 일부 NGO

➡ Facilitator 정리

-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 창구가 있어야 하겠다. (round table을 만들어야 하겠다)
- 환경교육진흥법이 기존의 사회 환경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 각 수준별, 단계별 기준을 나누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각 영역별, 지역별, 특성별 다양성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일본의 사례 참조)
- 공익과 사익에 관한 문제 : 소급에 관한 문제
- 센터의 인적 구성과 지도사와의 연관 관계

2부 오후 session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이강오

- 환경교육진흥법의 취지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얼마나 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해야할 과제는 무엇이 있으며,
-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잘 담고 있는지를 진단, 평가해 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환경교육진흥법이 다음의 것들을 얼마나 잘 담고 있을 것인가
-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 학교 환경교육, 기존 단체의 의지와 지원에 대한 다양성 측면
- 환경교육의 질적 강화 : 네트워킹 문제, 교육센터, 프로그램 질 향상, 공공기관의 질 담보
- 환경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방안 : 양성과정, 인재육성, 혜택
- 환경교육을 정리하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방안 (정의, 규정)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정의

- 법상 정의 :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사람
- 관련 의견들 :
 - 환경교육 활동의 기획·분석·추진 및 평가활동을 수행한다.
 - 교육과정상 학교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교사 이외의 환경교육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
 -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민사회에서 환경보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가하는 사람
 -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이수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
 - 공교육 이외의 영역, 다양한 대상,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교육을 진행(기획·수행·평가)하는 자
 - 환경에 대한 건강한 철학과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갖춘 자로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을 기획·진행·분석·평가활동을 수행하는 자
 - 지구·지역을 대상으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평가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
 - 국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해 이해와 실천적 소양을 갖춘 자로 환경교육을 수행하고 함께 실천하는 자

-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사회발전에 대한 기본 철학을 지니고 환경교육의 기획과 진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협의적 측면 : 환경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자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환경교육을 기획·개발·운영·평가하는 자

⇒ 지구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진행·평가하는 자

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 오전 논의에서 나온 쟁점들

1. 논의 구조 Round table를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2. 수준 설정
 3. 다양성 수요(주제, 지역 역량)
 4. 수요·공급 문제(직업화, 공식화)
 5. 소급문제/공공성과 상업성
 6. 심사자, 심사기준
 - 수준 설정의 단계 설정 구분에 대한 논의
-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 때문에
- 어느 단계에 어느 만큼의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 이에 대한 난이도와 비중
 - 적용 문제

* 서주원

-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소급 문제에 관하여
- 환경교육진흥법상으로는 기존의 환경단체, 풀뿌리 단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 사회환경교육지도자를 3단계 정도로 나누고, 인증기관도 함께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정하여 기존의 활동가들을 수용하는 방안. 초급, 중급, 고급 인증기관으로 구분하여 함께 지정하도록 하며, 기존의 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중급 인증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2부 오후 session (2)

○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가져야 할 소양과 태도

이동엽

- 생물 및 사물에 대한 친근감
-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 목표수행에 대한 책임감

서승만

- 인간 사랑과 자연 사랑 마음
- 생태적 감수성
- 봉사정신(non-profit)

정병준

- 친환경적인 생활태도
- 생명 존중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

이재영

- 다른 사람과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기
-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걱정
- 다른 생명에 대한 애정

하시연

- 환경에 대한 감수성(생태적 감수성)
- 비판적 사고력
- 공정성(중용)

박영준

- 자연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태도)
- 환경 보호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성실한 태도

차수철

- 수요와 중심의 친화력
- 호기심과 탐구심
-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연계성)

박완희

- 생태적 감수성
- 공동체 의식, 사회 봉사 정신
- 생명 존중, 성실성

이강오

- 사회(변화)에 대한 애정
- 공동체적 삶에 대한 철학/가치관
-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가치관

이미애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 지구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겸허한 자세(자연 환경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다)
- 인간 의식의 변화로 지구 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

오바로

- 환경적 철학 및 도덕성
- 환경적 감수성
- 사람을 대하는 인간적 신뢰도
- 평소 친환경적 생활습관의 체득
- 외향적인 태도와 일에 대한 책임성
- 커뮤니케이션 능력(구술 능력)

서주원

-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 생태적 철학관
- 실천력(함양 능력)

박종철

- 자연과 인간에 대한 높은 이해
- 환경과 공해에 대한 지식
- 친환경적 삶에 대한 확립된 가치관

김혜애

- 생태적 삶의 실천
- 지구와 세상을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 (다양성 존중, 인권·평화 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

- 피교육자에 대한 깊은 애정

이인세

- 환경에 대한 건강한 철학
- 친환경적인 삶의 실천
- 생태적 감수성

양경모

- 전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 주요 국내 환경 운동(보전) 사례 학습
- 생명 존중

정수정

- 친환경적 삶에 대한 의지
- 환경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 커뮤니케이션 능력

최석진

- 환경교육, ESD의 기본 내용 이해
- 사회 교육의 특성 파악
- 활동 능력 구비(기능, SKILL : 대상자의 교육, 기자재 활용, GAME 능력 등)
- 솔선 수범하는 태도

참고문헌

김용하(2003), 숲해설가 자격제도 입법 추진 방안, 숲해설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산림청 · (사)숲해설가 협회

김인호 외(2003), 환경해설가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개발연구, 신구대학

김인호(2005), 숲해설가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 바람직한 숲해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김인호(2005),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창립대회 워크숍 자료집.

김인호(2005).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의 주요과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준비대회 자료집, 89-97.

박미선 외(2003), 우리나라와 독일 대학 산림과학과 환경교육 교육과정 비교 연구, 환경교육, 15(2) : 49~60.

송영은(2004), 각국의 환경교육 관련 자격제도 탐색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환경

교육, 17(2), 79-93.

송영은(2006), 사회 환경교육 지도자의 자격 제도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이광호 외(200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연구, 문화관광부.

이선경 · 이재영 · 김인호. (2003).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평가 -한 · 중 · 일 환경 교육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논문집, 24. 105-115.

이재영 외(2004),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 경기도.

이재영 외(2005), 청소년 녹색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 한국녹색문화재단, 공주대학교.

전영우(1998), 자연(산림)안내자 양성과 활용을 위한 제언, '숲과 자연교육', 수문출판사, P.226~235.

최석진 · 신호상 · 이선경 · 이재영 · 조길영(2003),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및 환경교육사 제도 연구,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하시연(2006), 숲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Richard E. Osorio(2002), Establishing a National EE Certification Program, NAAEE.

(社)全國林業改良普及協會(2000), 森林インストラクター入門, (社)全國林業改良普及協會.

岡島成行(2002), 自然學校をつくろう, 山と溪谷社.

食野 雅子 · 호ー니ソグ睦美(1992), イソタープリテーツヨソ入門, 小學館.

日本 環境保全協會(2002), 環境教育Counsellor 紹介, 東京

清里環境教育フォーラム實行委員會(2000), 日本型 環境教育の「提案」改訂版, 小學館.

環境學習のための人づくり・場づくり編集委員會(編) (1995), 環境學習のための人づくり・場づくり, ぎょうせい.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개요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방향

이재영(공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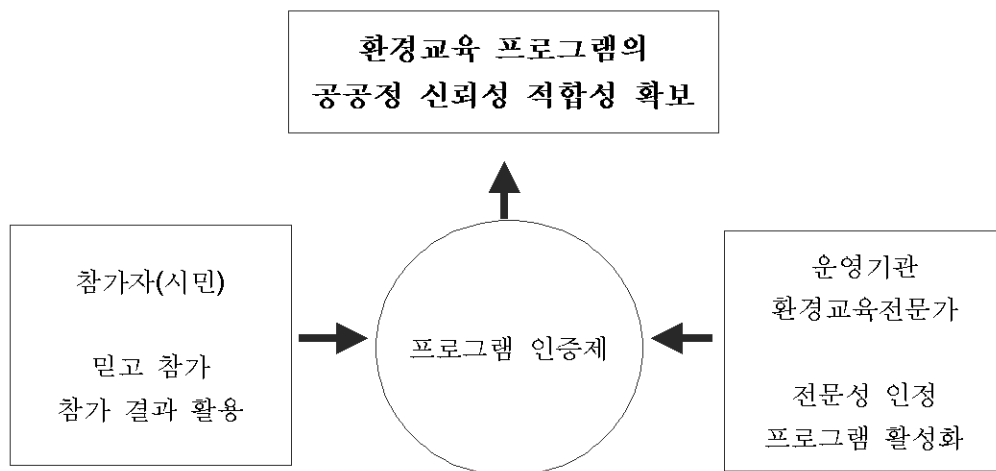
1. 배경과 목적

1) 배경

교육	주5일제 수업의 도입으로 인한 소규모 체험중심 청소년 활동 증가 학교-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10대와 20대 청소년이 소비중심 계층으로 부각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활동의 확대로 경제-환경 통합 활동 증가
여가	학습이 결합된 가족단위의 생산적 여가 문화의 확대 외국 관광 경험의 확대로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질 향상 요구
건강	웰빙과 로하스 바람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화	전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 심화와 그에 따른 대응 필요
환경	200개가 넘는 환경해설가 양성과정 운영

2) 목적

-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해 참가자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



3) 환경교육진흥법의 관련 조항

재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에 보면 프로그램 인증제에 대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환경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기본방향

1) 지원 중심의 긍정적 접근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선별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해가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인 증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프로그램이 갖추고 있는 조건을 평가하여 딱지를 붙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반감과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다. 오히려 다양하고 내실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진행되는데 있어 지역이나 단체별로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주된 추진전략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문턱의 높이를 천정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높여가야 할 것이다.

2) 인증기준과 항목의 현실화

새로 도입되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반감과 부작용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청소 시행되기 2년 전인 2004년부터 공청회 있었고 그 결과 초기에 140개 인증기준이었으나 토론과 비교검토를 거쳐 37개로 축약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대화와 조정의 과정이라고 하겠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증제는 이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증심사위원회나 인증을 받을 단체나 기관에게 현실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증기준 현실화의 주된 전략은 인증기준의 수를 줄이는 것과 인증을 받는 신청자가 인증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지방, 소규모 단체에 대한 배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은 영역을 막론하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 큰 단체와 작은 단체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증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소규모 단체가 소외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구조설계와 운영방안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와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4)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 추구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환경교육은 자연체험과 생태적 감수성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때로는 전체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볼 때 체험형 활동이 과점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앞으로의 환경교육은 자연체험형, 문제해결형, 지식탐구형, 모험놀이형, 문화창조형, 사회변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인증제의 도입과정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어디까지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인가?'와 같은 경계설정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와 같은 통합추구형이 되어야 할 것이며,

3. 기대와 우려

1) 기대

-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의 신뢰 구축
-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개발, 제공자에게 자기 평가, 점검, 수정, 보완의 기회 제공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가치 공식화를 통한 참여 확대 (참가 경력 공식화)

2) 우려

- 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 간의 차별 우려
- 지원 없는 간섭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장애 우려
- 인증 형식 갖추기 어려운 프로그램 위축과 프로그램 정형화 우려
- 적절한 지도인력의 배출 및 확보(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이슈와 연계하여 논의 필요)

참조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에 대한 우려 (200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시를 위한 활동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소규모 시설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만 강조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은 위축되지 않을까?- 인증제와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연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있는가?

참조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종합보고회 (200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진: 국가청소년위원회, 활동복지단, 인증위원회, 각 시도의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지도사- 목적:<ol style="list-style-type: none">1) 2007년 인증제 운영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2)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 지도자들의 발표를 통해 효과를 공유- 주요 발표 내용<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프로그램 기준을 알게 됐고, 실무지도력의 전문성,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갖게 됨2) 청소년 시설 환경개선, 지도인력 증원, 내실있는 운영이 뒷받침돼야3) 총 214건이 접수됐고 인증된 프로그램은 180건으로 84.1%가 통과4) 인증제 표어 및 수기, UCC공모전을 펼쳤고, 우수 인증프로그램 운영 및 보유기관을 선정해 시상·인센티브를 제공5) 대국민 홍보부족, 기업·학원·교회 민간시장의 등의 인증신청 저조, 공공시설 및 생활권 청소년 시설의 참여기관 편중 등이 문제점

4. 유사 사례 분석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1) 정의

청소년 활동인증제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질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사전 인증하는 제도로써, 인증된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인증 표지를 발급받아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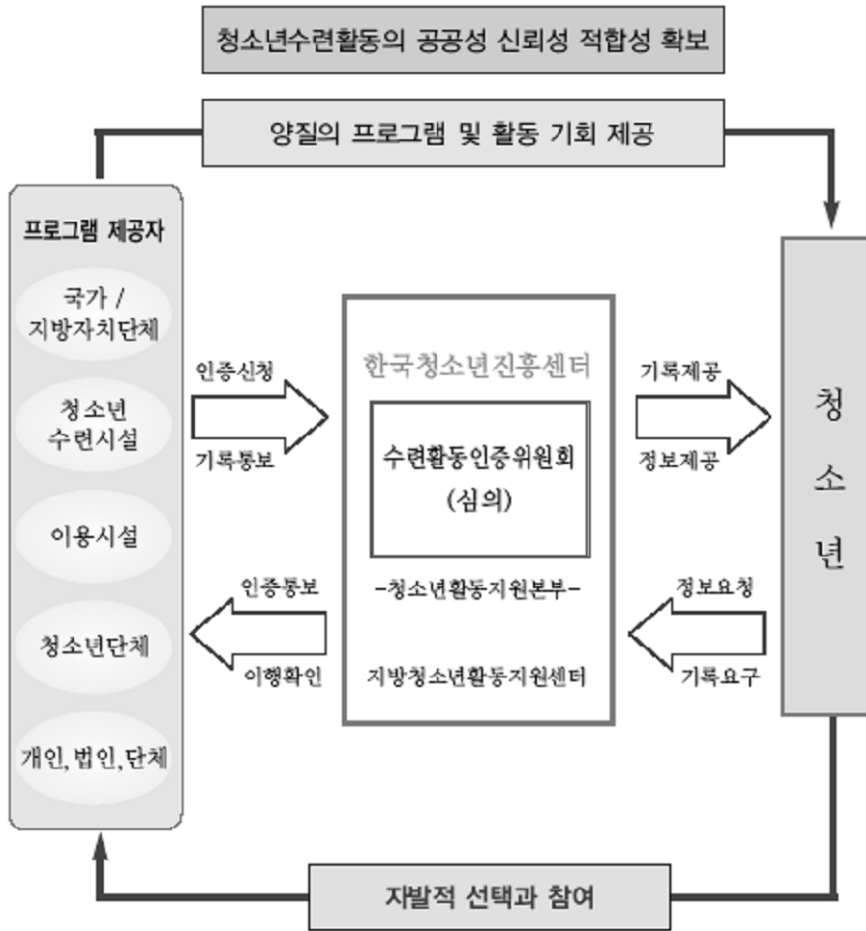
(2) 현황

- 2008년 4월 25일 현재 434개의 활동이 인증됨
- 조직체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인증위원회(위원장+13명 위원) -> 인증심사원
- 192명의 인증심사원이 활동 중
- 활동기록 관리와 발급이 인증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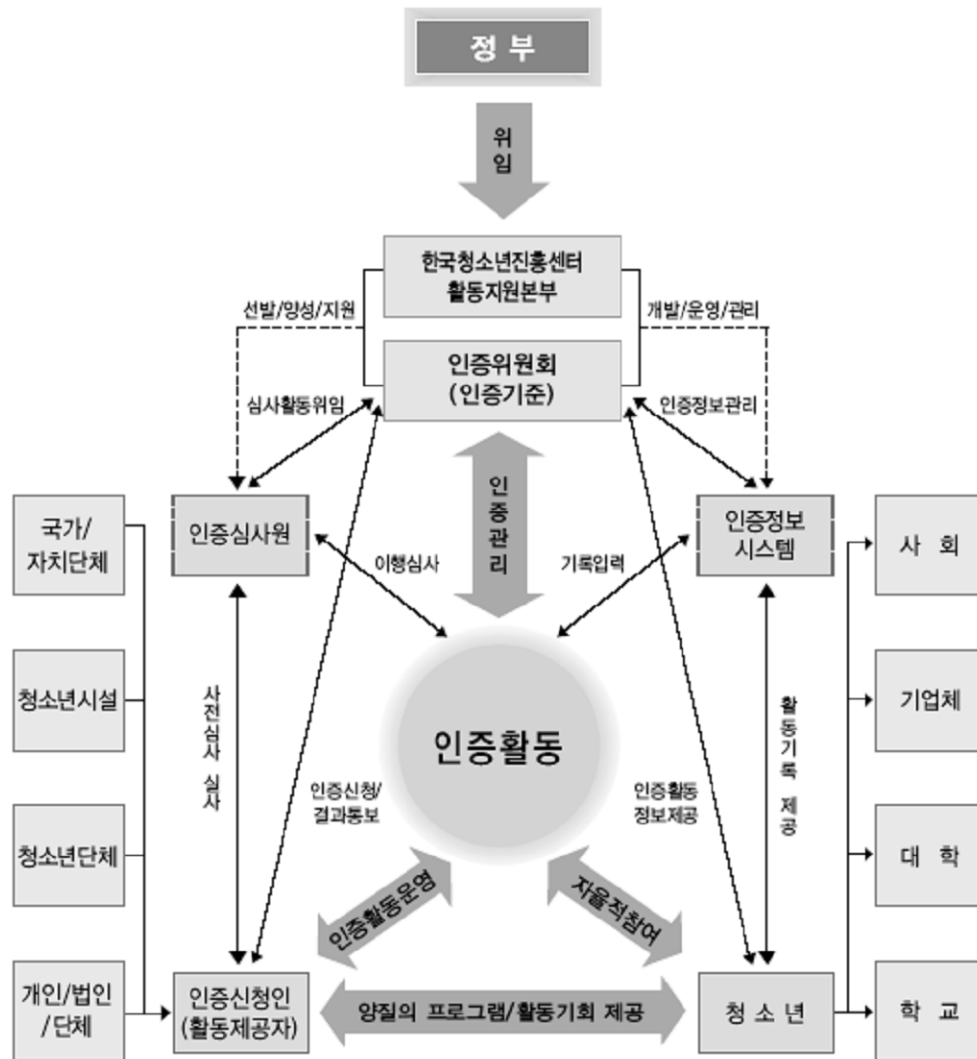


그림 2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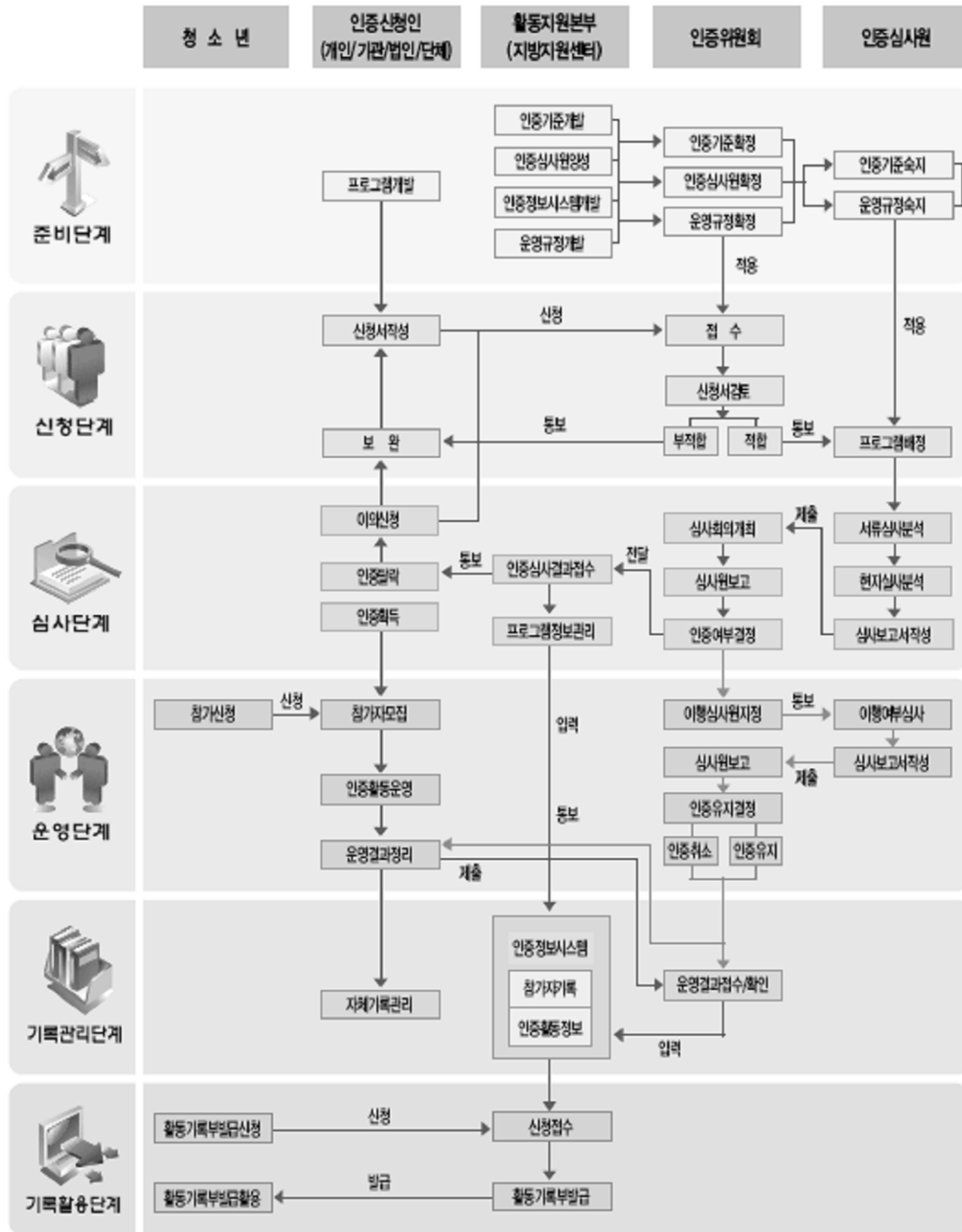
인증제 사업체계도



인증운영체제 모형도



인증제 운영 업무처리 절차 모형도



인증운영체제의 핵심요소

구 분	기능 및 특성
인증위원회	인증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여부 및 인증 관련 제반업무를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
활동지원본부	인증위원회를 지원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조직
인증기준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기준(standard)
인증심사원	소정의 전문 양성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심사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인증정보시스템	인증활동정보 및 개인 활동기록을 관리하고, 대국민 인증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인증신청인 (활동제공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및 단체, 개인/법인/단체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참여청소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인증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인증활동	인증신청인이 작성한 계획 중에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
기록이용자	학교/대학/기업 등 청소년 개인의 인증활동기록부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

인증제 담당역할별 업무내용

담 당	업 무 내 용
프로그램 인증 신청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활동지원본부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인증심사원 2명 배정
활동지원본부(인증정보시스템)	신청내용 등록 및 신청현황관리
인증심사원	사전심사 분석 및 심사결과보고
인증위원회	인증심사원보고 분석
활동지원본부(인증정보시스템)	인증심사원 보고 등록
인증위원회	인증심사 결과 결정 및 통보
활동지원본부(인증정보시스템)	인증심사 결과 등록 및 통보 내용 등록
프로그램 인증 신청자	통보결과 접수, 탈락 시 재신청
인증프로그램운영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실행, 실행 결과 기록
인증위원회	이행여부 확인계획 결정
인증심사원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보고(현장 → 본부)
활동지원본부	확인결과 보고(본부 → 위원회)
활동지원본부(인증정보시스템)	확인결과 등록
인증프로그램운영자	참가자 활동기록부 제출
활동지원본부(인증정보시스템)	개인별 기록 관리 및 기록부 통합 관리
인증활동 참가자	개인별 기록 활용

2) 산림청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1) 근거조항 및 현황

제7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①산림청장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산림문화·휴양 체험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2. 숲해설가 교육과정
3.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및 인증기준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2007년 10월 현재 4개 숲해설가 양성과정이 인증

- 2008년 4월 현재까지 산림휴양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된 것은 미확인

(2)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① 교육프로그램은 10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는 내용(활동 및 현장학습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함

<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가)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나)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다) 요약	○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주제, 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라) 진행과정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마)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바) 참고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사) 단어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②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영역별 교육내용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도록 하여야 함

<표> 영역별 교육내용

교육 내용	세 부 교육 내용
(가) 산림과 인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및 산림환경 ○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 ○ 산림개발과 보존 ○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나) 산림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생태계의 구성인자 및 변화 ○ 산림생태계내의 에너지 등 순환 ○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 산림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관계
(다) 산림문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행동유형과 산림 ○ 산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 ○ 인간의 문명 활동과 산림 ○ 경제개발과 산림 ○ 산림관련 정부의 정책
(라) 산림상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상태에 대한 정의 및 영향인자 ○ 산림상태를 측정·평가하는 방법 ○ 산림상태 측정과 관련된 학문 ○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기법
(마)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욕구 및 권리 ○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의무 및 책임 ○ 산림과 개인의 가치관 ○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바) 산림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및 선택 ○ 문제발생에 따른 결과예측 방법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도출 및 해결방안 개발 ○ 관련정보의 공유 및 확산 방안

(2)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서 서류 검토 내용

- ① 교육프로그램은 10시간이상 교육할 수 있는 내용(활동 및 현장학습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②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이 선정되었는가?
- ③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등 소개는 충분한가?
- ④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주제, 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등의 요약은 되어 있는가?
- ⑤ 교육프로그램 진행과정상 필요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 ⑥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 ⑦ 교육프로그램의 참고자료는 제시되어 있는가?
- ⑧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설명되어 있는가?
- ⑨ 교육프로그램이 6가지의 영역별 교육내용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는가?

3) 경기도교육청의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2007. 8)

(1) 목적: 명품교육 프로그램 판단 기준 및 인증 제도 마련으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기교육의 특성화·차별화
- 학교교육의 자율성 창의성 확보 및 브랜드화
-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우 받는 제도와 정책의 정착
- 기대와 감동 주는 학교 교육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2) 프로그램 영역

- ① 초등 명품 수업실기 대회, 중등 UCC 수업 실기 대회 프로그램, 교과 특성화 학교 및 교과 특기자 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각종 연구 대회 관련 명품교육 프로그램 등
- ② 최신행(New), 최초(First), 최상(Best)의 교육 프로그램
- ③ 기타 영역

영역	내용
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교과 등
인성	인성교육, 생활지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창의성	창의성 교육, 발명 교육 등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시스템 및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지도교사 프로그램 등
수준별 교육과정	교과별 수준별교육, 학교 수준별교육, 영재교육, 부진아 지도 등
재량특별	재량활동, 특별활동 영역별 교육
독서·논술	독서교육, 도서관 활용 교육, 논술교육 등
기타	환경교육, 진로교육, 기타 교육활동 등

(3) 인증절차



(5) 기대효과

- 학교별·교사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활용의 전문성 확보
- 교원의 자긍심 확보와 교단 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 명품교육의 발전적 정착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5. 종합 및 제안사항

- 1) 2008년 한국의 상황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환경교육의 양적 확대와 프로그램 전문화를 통한 질적 심화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프로그램의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3)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도입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많은 기관, 단체는 물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4) 발제자는 인증도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지원중심 접근, 인증기준과 항목의 현실화, 지방, 소규모 단체에 대한 배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 추구를 제시하였다. 이해당사자의 경험과 처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상호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 5)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프로그램 인증제의 도입 목표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기본 골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6)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및 인증제도와 환경교육센터 지정제도와 함께 묶어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7) 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시스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기록을 관리하고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시스템이 함께 도입되어야만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8) 환경교육진흥법의 발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모델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와 운영시스템을 제안하되,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환경교육의 특성에 맞게 모델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팀에 의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팀에는 연구자, 교사, 활동가 등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 록

□ 환경교육진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라 함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라 함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의 교육·활용 및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 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 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 ①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